

2024년도 산림치유 운영사업 지침

2024. 1.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본 지침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치유 운영사업에 대하여,

- 운영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사업 추진·집행·정산, 행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

※ 일러두기 : 본 지침상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예규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

순서

1. 사업 개요	1
2. 업무 흐름도	2
3. 추진 체계	3
4.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4
5. 제안서 평가	5
6. 사업자 선정 및 협상	9
7. 계약 체결	12
8. 위험성 평가	13
9. 사업 추진	16
10. 사업비 집행	19
11. 사업추진 부적정 업체 등 관리	21
12. 관리·감독 및 행정사항	23
13. 추진일정	25
[붙임 1] '24년 4대보험율 적용기준(안)	26
[붙임 2]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27
[붙임 3] 시연심사 평가표	28
[붙임 4]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일지	29
[붙임 5] 산림치유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방법	30
[붙임 6] 산림치유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설문지	31
[붙임 7] 사업비 산출내역서	33
[붙임 8] 사업비 집행내역	34
[붙임 9] 사업제안서 구성 내용(예시)	35
[붙임10]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수준 평가기준(예시)	36
[붙임11] 과업지시서등에 반영할 내용(예시)	42
[붙임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43
[붙임13] 산림치유분야 전문업 등록 현황	44
[붙임14] 우수전문업 선정 목록	50
[붙임15] 사업참여 동의서(예시)	51
[붙임16]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예시)	52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16.3)에 따라 '18년부터 산림치유 운영을 직접고용에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육성·지원

* (기존) 직접고용 → (2018)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종합산림복지업) 운영

나. 사업목적

- 산림치유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치유의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치유 분야 민간산업 활성화

다.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사업기간 : 연중(1~12월) 또는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라. 법적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 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2. 업무 흐름도

구분	단계	내용	담당자
①	운영사업 계획수립(3p)	· 산림치유 목표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산림청 ▪ (지방청, 시·도) 수행기관 담당자
②	사업자 모집 공고(4p)	· 공고시기 : 1~2월 · 공고방법 등	▪ 운영기관
③	사업신청 (4p)	· 사업신청 자격·방법 · 유의사항 등	▪ 운영기관 ▪ 산림복지전문업
④	제안서평가 (5p)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등	▪ 운영기관
⑤	사업자 선정 협상 (9p)	· 최종 사업자 선정 · 사업내용 등 협상	▪ 운영기관
⑥	계약체결 (12p)	· 계약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	▪ 운영기관
⑦	사업추진 (17p)	· 사업장 관리, · 복무 관리, 직무교육 등	▪ 운영기관 ▪ 산림복지전문업
⑧	사업비 집행 (19p)	· 사업비 집행과 정산	▪ 운영기관 ▪ 산림복지전문업
⑨	행정사항 (21p)	· 관리 및 감독 · 행정사항 등	▪ 운영기관 ▪ 산림복지전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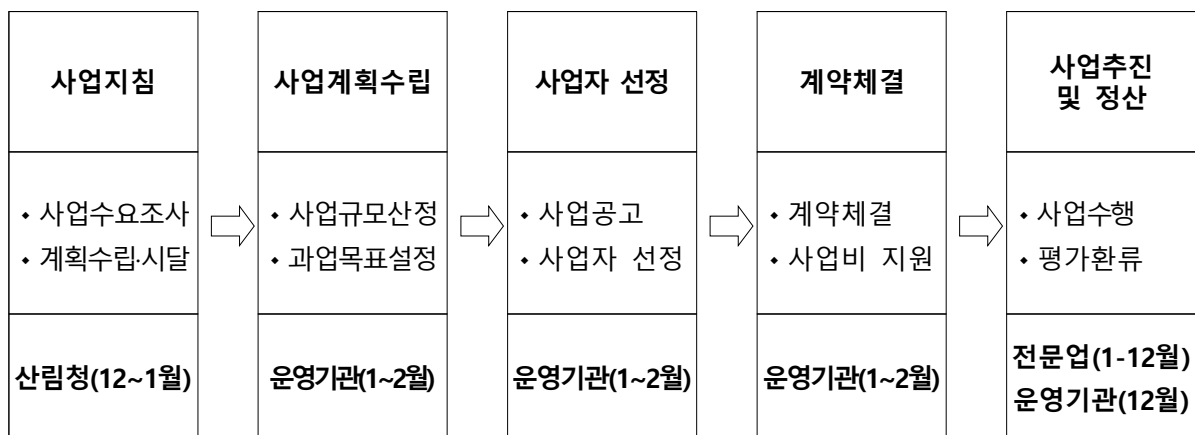
3. 추진 체계

가. 주체별 역할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운영기관')는 산림치유 운영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관리·감독 등 사업운영
- 주체별 역할
 - (산림청) 산림치유 운영사업 지침 수립 및 평가·환류 등 총괄
 - (운영기관) 산림치유 운영사업 계획 수립,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 관리·감독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치유지도사 운영·관리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관련 행정업무 및 집행·정산 등 계약된 과업 이행

나.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운영·평가



4.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가. 사업계획 수립

- 운영기관별 전년도 실적, 사업예산, 산림치유 수요 및 성과목표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되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기관협업,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운영계획 수립
 -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연계, 양성기관 교육생 실습 지원, 취약계층, 숲태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

나. 사업자 모집 공고

- 공고 주체 : 운영기관
 - (국가)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공고 시기 : 연초(1~2월 중)
- 공고 장소 : 나라장터,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운영기관 누리집 등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jobs.fowi.or.kr)의 '사업 공고'란 등록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조건 및 제출서류 등을 공고문에 안내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적용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이 추진되는 사항 명확히 명시

다. 사업 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자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신청 방법

-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가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사업을 신청하는지 확인
 - * 사업공고 기간 내 신청 업체는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사업참여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는 인원은 총 사업 참여전문가 인원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 유의사항

- 특정 전문업에서 광역단위별 사업 공고 3건, 전국 단위 사업 공고 5건 초과 신청 지양

※ 특정 전문업에서 산림치유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연초(1~3월) 주간 점검 (사업자 선정 관련) 실시(시·도, 지방청 단위 1차 점검 추진)

5. 제안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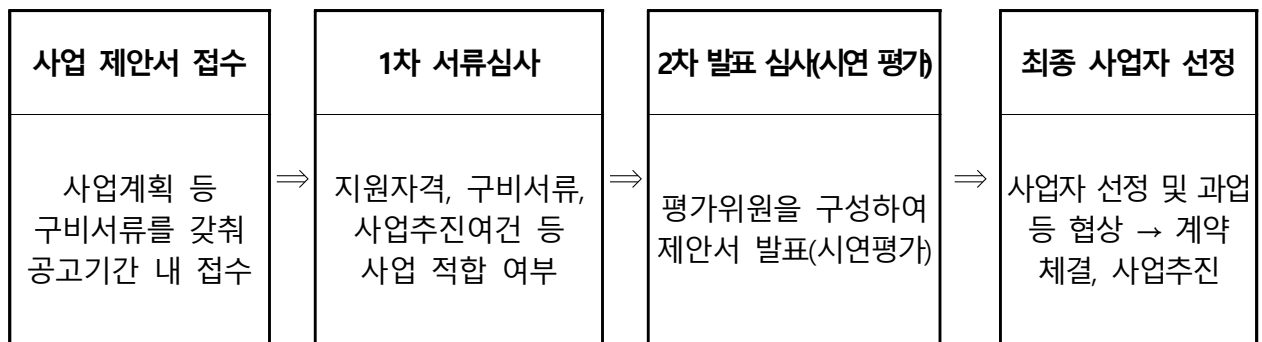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절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자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 (산림청) 평가위원회는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481호, 2021.3.28.시행)」 적용
 - * 추정가격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 1억 미만(5인 이상), 1억 이상(7인 이상)
 - (지자체) 산림청 규정을 준용하되 기관별 자체 규정으로 심사 가능
 - * 지자체 민간위탁조례, 자체 규정 등
- ※ 제안서 평가 시 외부위원은 전문업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은 가급적 지양

○ 심사 절차

- 서류·발표 심사, 시연 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 여건 등
- (발표심사) 제안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 (시연평가) 발표심사 시 사업 참여예정 전문가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연



- *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 등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 시·도 소재 전문업이 1개인 경우 등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소수점 이하의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 사업계획서 타당성 > 사업 수행능력 > 사업수행팀 구성

나. 사업추진능력 평가

○ 사업 신청 전문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평가

- 사업 제안서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
 - 연간 치유프로그램 계획 시 계절 및 대상을 고려한 운영 계획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 양성기관 교육생 실습 지원, 취약계층, 숭태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

○ 사업 참여 전문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1급 및 2급) 충족여부
 -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되, 참여전문가의 50% 이내는 서면 '사업참여동의서' 첨부로 대체할 수 있음
 - 필요시 사업 참여 전문가 외 유사시 대체인력 1명 이상 확보
 - * 대체인력은 전문업 등록인원 외 인력풀로 제시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전문가 및 대체인력의 자격증 진위 여부는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서 확인(제안서 제출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 * 산림복지전문업지원시스템 > 전문인력자격확인 > 자격증진위확인
- 사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참여 여부
 - * 참여인력 인적사항을 확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실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또는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과업지시서 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확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에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 (수의계약)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등 확인 후 항목별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업체 선정
- * 평가결과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계약상대자)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평가 가점

○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수상실적 가점

- 최근 3년('21~'23) 이내 산림치유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 수상시 속한 전문업

- 전문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1~'23)
 - (참여 전문가 70%이상) 2점
 - * '23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2점 적용)
- 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 선정 가점
 - 최근 3년('21~'23) 이내 전문업 실태조사 우수전문업 선정가점 1점

마. 평가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산림치유분야 전문업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6.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최종 사업자 선정

-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한 협상적격자 선정
 - 선정된 협상적격자가 협상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평가결과 기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에 부합하는 차순위자만 해당
- 사업물량 등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 1개 권역(시·도 단위) 내 특정전문업에서 3건 초과, 전국적으로 특정전문업에서 5건 초과 사업자 선정 지양
 - * 1개 전문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신규 전문업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시 특정전문업의 사업량 제한(본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만 해당, 기타 자체 추진사업은 해당 없음)
 - * 전문업 신청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예외 적용

나. 사업 물량 등 협상

○ 연간 산림치유 운영사업 물량 확정

- 당초 전문업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운영기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물량 협상
- *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횟수’, ‘치유의 숲에 상시 배치’ 등 연간 사업 목표물량을 협상(과업량 자율조정)
- * 추가로 요청되는 행사성격의 과업은 기존 사업 물량에 포함시키는지 별도 변경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반영하는지 여부 확정

○ 연간 사업비 산출내역 및 집행 정산 확정

- (인건비) 산림치유지도사 임금은 (1급) 115,500원/일, (2급) 94,500원/일 적용
- (전문인력 상시 배치) 1급 : 14,430원/시간, 2급 : 11,810원/시간
- (프로그램 운영 횟수 기준) 1급 : 57,750원/회, 2급 : 47,250원/회
- * 상시배치가 아닌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횟수 기준으로 과업을 부여할 경우 한 프로그램 당 3시간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준 시간이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상시배치 기준을 준용
- (경비) 보험료, 교육비, 피복비는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재료비, 홍보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기재부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참고)
- (보험료) '24년도 4대 보험료율을 적용('23.12월 말 확인)
- * 4대보험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고용보험 1.15%, 산업재해 0.76%,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27%)
- * 사업주 부담 보험료에 대해 지원(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
- * 참여인력 중 아래의 경우 등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험료는 다른 목의 경비로 편성할 수 있음

① 참여인력이 60세 이상인 경우(국민연금 면제), ② 사업자 대표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고용보험 면제), ③ 국가유공자, 보험 수혜자 등

- (여비)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에 따른 교통비는 협의 하에 출발지(상주 근무지, 업체 및 운영기관 사무실)로부터 목적지까지 거리(km)에 당일 국내유가 적용* 왕복 실비정산·집행

* 국내유가 : 오피넷(www.opinet.co.kr) → 국내유가 → 주유소 → 평균판매가격 → 당일 '보통 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등 가격 적용

- (피복비)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피복비를 계상
 - * 피복비는 산림치유지도사 근무복 구입 비용이며 계상된 사업비보다 초과할 경우 경비에서 조정하여 편성가능
- 사업장(치유의 숲 등) 시설의 보험료, 전기료 등의 운영·관리비는 산출 내역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운영기관 예산으로 집행
- (산업안전보건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노무비의 1.85% 반영
 - * '23년 조달청 공사 제비율(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5억미만 기타건설공사 요율 1.85% 준용함
- (일반관리비) 요율 3% 이상 반영, 최대 6%
- (이윤) 요율 5% 이상 반영, 최대 10%
- 비영리 법인 등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계약 상대방에 한하여 제외 가능
- 사업 물량 달성 정도에 따른 사업 완수 후 사업비 정산 방법 결정
- 산림치유 참여인원 등 과업 달성 시 사업비 100% 집행 또는 과업을 달성한 경우에도 당초 예산계획 대비 미집행 부분 환수조치 등

○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 부과

-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는 국립치유의 숲*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되 지자체는 이용료 징수에 관련한 자체 조례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의 기준 적용

* 국립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104호) 참조

○ 근무일지 관리 및 행정일정 등 협의

-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기관과 전문업이 협의하여 결정
- 기본적으로 전문업이 참여인력의 관리의무를 갖고 있으나, 특정 산림치유 장소에 상시 배치되는 경우 등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는 장소에서는 일정 및 근무일지 등의 공동 관리체계 구축 권장
- 월별 인건비 등 집행 시 운영기관과 기성금 청구 서류 및 관련 행정 일정 등 협의

7. 계약 체결

가. 근거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 계약법에 따른 계약

* 전문성 심사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권장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3.6.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4조(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나. 예산편성

- (예산과목)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예산으로 전문업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목적으로 편성·집행
- (계약서 작성)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체결
 -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 * 계약상대자(전문업)가 부득이하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체결

다. 계약체결 일정

- 2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신속히 처리하여 적기 사업을 추진

라. 확인사항

- 계약추진 시 확인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
 - 계약체결전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확인

8. 위험성평가

▲기관별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 의함

가. 위험성평가 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 수립
- 법적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림청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절차 매뉴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 매뉴얼

(시행령 제4조 제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하생략)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6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주가 주체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 사업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등), 발주처 담당자, 전문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

다.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 (대상) 산림치유 운영 사업의 모든 사업장
- (시기) 사업착수 전 현장인도 시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동일 사업장 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실시

라.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회의 등 추진
- 유해·위험요인 등 파악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평가 절차 및 추정 방법
 -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 매뉴얼 상 가능성 및 중대성의 곱셈법 적용
 - * 기관별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에 따라 실시

위험성 평가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준비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④ 위험성 결정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⑥ 기록 																																																																																		
위험성 평가 추정 방법																																																																																		
<곱셈법(가능성x중대성)>			<곱셈식 위험성 결정(5x4단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중대성</td> <td style="width: 10%;">최대</td> <td style="width: 10%;">대</td> <td style="width: 10%;">중</td> <td style="width: 10%;">소</td> </tr>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능성</td> <td style="text-align: center;">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able>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단계	4	3	2	1	가능성	단계	5	20	15	10	5	최상	5	20	15	10	5	5	상	4	16	12	8	4	4	중	3	12	9	6	3	3	하	2	8	6	4	2	2	최하	1	4	3	2	1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위험성 크기</th> <th>허용 가능 여부</th> <th>개선방법</th> </tr> <tr> <td>16~20</td> <td>매우 높음</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허용 불가능</td> <td>작업 중지, 즉시 개선</td> </tr> <tr> <td>15</td> <td>높음</td> <td>조건부 수용, 신속하게 개선</td> </tr> <tr> <td>9~12</td> <td>약간 높음</td> <td>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td> </tr> <tr> <td>8</td> <td>보통</td> <td>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td> </tr> <tr> <td>4~6</td> <td>낮음</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허용 가능</td> <td>필요에 따라 개선</td> </tr> <tr> <td>1~3</td> <td>매우 낮음</td> <td>필요에 따라 개선</td> </tr> </table>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작업 중지, 즉시 개선	15	높음	조건부 수용,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단계	4	3	2	1																																																																												
가능성	단계	5	20	15	10	5																																																																												
최상	5	20	15	10	5	5																																																																												
상	4	16	12	8	4	4																																																																												
중	3	12	9	6	3	3																																																																												
하	2	8	6	4	2	2																																																																												
최하	1	4	3	2	1	1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작업 중지, 즉시 개선																																																																															
15	높음		조건부 수용,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조건부 수용, 가급적 빨리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필요에 따라 개선																																																																															

마.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함
 -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위험성 감소 조치

바. 기록 및 보존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보존

<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

- ❖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 ❖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 추진

가. 사업 기간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탄력운영 : 1~12월
 -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최소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
 - 다만,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연중 전문인력이 필요한 장소에는 과업지시서 작성 시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연간 사업운영 및 참여인력 등 사업계획에 반영

나. 사업 수행

- 전문업의 시설 관리 공동의무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숲길, 도시숲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노선)에 낙석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등 전문업은 운영기관에 알리거나 경미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장 관리
 - * 산림치유활동 장소 내 위험요소 인지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 수립하며, 근본적 안전을 조치 협력이 필요한 낙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거
- 사업 목표물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조정 가능
 - 폭염, 장마, 감염병 등 기후·환경적 요인에 따른 당초 목표 물량 대비 사업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운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물량 협의를 통해 변경·조정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사업 참여 전문인력 교체 가능
 - 운영기관은 사업을 수행 중인 전문인력이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전문업은 전문인력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전문업에서는 당초 제안서 평가 시 참여인력을 계약체결 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모집 공고 시 참여조건에 사업 착수 후 당초 구성된 전문가의 최소 참여조건(3개월)을 명시하고 50% 이상 교체를 금지
-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등록인력,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인력 각각 50% 이상 교체 금지
- * 단, 해당 시·군 또는 임의 권역으로 설정한 지역 내의 전문업이 3개 이하 또는 부득이한 경우(본인사망, 상해·질병 치료 등) 최소 참여조건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적용 할 수 있음

○ 산림치유 참여기관(참여자) 모집 시 현장 보험가입 등 사전 고지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같이 고정된 시설에서 이뤄지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아닌 도시숲, 공원 등에 찾아가는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은 현장 보험가입 등의 사전 고지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혼선이 없도록 조치
- * 특히, 찾아가는 산림치유 등 장소가 유동적인 경우 또는 현장 여건 상 필요한 경우 참여 전문가의 재해보장보험 등 가입 조치

다. 근무복

- 근무시 산림치유 활동에 편리하며 프로그램 참여자가 산림치유 지도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통일된 근무복(생활한복-아래 참조)을 착용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찰 패용 의무화
- (근무복) 아래와 동일·유사한 형태 및 색상으로 구매 가능 업체에서 자율 구매
- * 하복 : 상의-회색, 하의-회색 / 춘추복·동복 : 상·하의 회색
- * 사업비에 반영된 배정인원 만큼 산림치유지도사 근무복 반드시 구입

<근무복 예시>

하복	춘추복·동복	
		

라. 직무 교육

- 사업 수행 전문가 직무교육 참여
 - 권역별 직무교육 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전문가는 직무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과업 일정 조정 필요
 - 다만,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 경우 등 일정이 있는 경우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교육 참석 독려
 - * 필요시 직무교육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운영기관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미리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문 통보)

- 교육기관 및 일정
 - (교육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장소) 진흥원 소속기관
 - (대상) 산림치유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 (교육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별도 계획 통보

10.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 인건비 월별 집행 및 경비 선금 집행
 - 운영기관 및 전문업 간 협의에 의해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선금 또는 월별 기성금을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변경 집행
 - (사업비목내 변경)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비목 변경 가능
 -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와 계획을 운영기관과 협의
 - (사업비목간 전용) 과업량 달성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 폭염, 장마, 감염병 등 기후·환경적 요인에 따른 당초 산출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건비 및 경비 간 전용 사유와 계획을 운영기관과 협의
- ※ 전문가 인건비 예산을 모두 반영 후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비목 변경 가능

○ 낙찰 잔액 활용 등 불용최소화

- 운영기관은 낙찰 잔액에 대해 전문가 추가 선발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등 변경계약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나. 사업비 정산

○ 사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이상인 경우

- 전문업에서 과업 달성 시 운영기관에서는 계약금액 전액 집행
- * 지자체 자체규정 등에 따라 계약한 사업의 정산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다만, 경비에 대해서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획대비 집행액이 현저히 미달(50% 미만)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 완료일 기준 과업 달성률이 90%미만인 경우

- 사업 물량(교육 참여인원 및 대체업무 등)에서 미달된 비율만큼 사업비에서 정산
- 다만,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 물량 및 기간 등을 조정·연장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붙임 7]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비목별, 일자별) 및 관계 서류(최종보고서 등)를 제출받아야 함

- 운영기관의 필요에 따라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자료로 지출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11. 사업추진 부적정 업체 등 관리

가. 사업추진 부적정 업체

- 사업추진 부적정 업체는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계약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력 관리 철저
 - *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즉시 통보
- 부정·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운영기관은 사업자 관리 철저
 - 자격증 대여 및 미보유자, 사업참여 인력 상이
 - 사업비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등

나. 사업 중도 포기 시 조치 방안

- 사업 진행 중 중도 포기 시 사업비 집행
 - 전문업이 사업 수행 중에 고의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한 일정까지 집행된 사업비로 일할 정산
 - 이 때, 사업에 참여한 산림치유지도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할 계산된 임금 집행 서류 확인 후 기성금 등 집행
 - 집행되지 않은 교육비, 재료비 등 제반경비는 환수 조치
 -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월별로 나누어진 금액에 사업수행기간(월)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여 집행{예시. 9개월 30백만원 편성 및 3개월 사업 수행 가정, 999천원(333천원*3월)} 집행으로 정산
 -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별도 영수증 증빙 없이 정산
- 차후 사업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잔여기간을 활용하여 차 순위자와 계약 추진 가능

- 사업자 평가 당시 차순위자로 선정된 전문업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요건 충족여부, 타 사업 수행 현황을 고려할 때 행정력 등 추진여건이 가능한지 등 파악 후 계약 추진
 - * 평가결과 기준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에 부합하는 차순위자만 해당

○ 사업 중도 포기자 관리

- 사업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산림치유분야 용역 수행에 제한(평가 감점 등)을 받게 되며, 운영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업을 즉시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통보
 - * 사업 중도 포기의 사유가 전문인력의 중도 이탈 등 전문인력의 고의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전문가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
- 사업 중도 포기자를 통보할 때에는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유(대표자 건강악화, 전문인력 중도 이탈, 행정력 부족 등)를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 등 1차 기관에서 공문 시행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전문업 및 등록된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에 반영하여 사후관리
- 차년도 산림치유사업 시행 시 사업 중도 포기자 등 리스트 공유 및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하고, 운영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한 전문업의 중도 포기 사실이 사업 불안요소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최종사업자 선정에서 배제
- 중도 포기 사업자 및 해당 산림치유지도사 리스트는 3년간 사업계획 등을 통해 공개하며, 이후에는 감점 미적용 및 자료 폐기
- 중도 포기 사업자 및 산림치유지도사는 향후 3년간 산림치유분야 표창 등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이외에도 관련 격려금, 전문업 워크숍 우수사례 선정 기관 등에서 제외

12. 관리·감독 및 행정 사항

가. 기관별 사업 관리·감독 실시

- (산림청) 사업 추진사항 총괄 및 집행 점검 실시
 - (점검 회의) 상·하반기(4월, 9월) 사업 집행실적 등 추진·애로사항 공유
 - (사업 점검) 상·하반기(5월, 10월) 사업 추진상황 등 집행 점검

- (운영기관) 1·2차 기관 사업 추진사항 및 부진기관 집중 관리
 - (사업관리자 지정) 사업 담당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사업 관리·감독
 - (참여자 관리) 사업 참여자 출결·근무일지 등 관리 감독
 - (사업 점검) 2·4분기(2회) 소속기관 사업 집행점검
 - (소속기관) '메모보고'로 점검(회의)결과 보고
 - (지자체) '공문' 또는 '온나라 기관 간 메모보고'로 점검(회의)결과 공유
 - (부진기관 관리) 사업 계약 지연 등 집행 부진 기관 관리
 - 3월까지 계약 미추진 2차 기관 등 향후 사업추진일정 체크
 - 2차 기관 등에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월별·분기별 집행 관리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문업 등록·관리 및 사업 중도 포기 등 관리
 - (전문업 관리) 부정 등록 또는 부실 운영 전문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중복 참여자, 사업 중도 포기 전문업 관리 등

나. 행정 사항

○ (운영기관 → 산림청) 사업 기준정보 및 월별 추진실적 등 제출

- 사업 기준정보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

· (내용)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사업 참여인원(남/여) 등

* 사업 기준정보 변경 시 수시 제출

- 분기별 추진실적 : 매월 1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내용) 분기별 참여인원, 예산 집행실적, 사업장 점검사항 등

* 지자체에서는 계약금액 및 집행실적 등 예산관련 내용 작성 시 국비 기준(사업비의 50%)으로 작성

13.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주 관	추진 일정
· 기관별 산림치유 운영 사업계획 수립	운영기관	'24. 1월
· 산림치유 운영 사업자 선정	운영기관	'24. 1~2월
· 사업 예산 배정	산림청	'24. 1월
· 사업 계약체결	운영기관	'24. 2~3월
· 사업 추진	전문업	'24. 1~12월
· 계약 미추진 기관 등 부진기관 점검	운영기관	'24. 3월
· 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산림청	'24. 4월
· 사업 추진현황 및 부진기관 집행점검	운영기관	'24. 4~6월
· 사업 집행 현장점검	산림청	'24. 5월
· 사업 집행 부진기관 점검	운영기관	'24. 6월
· 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산림청	'24. 9월
· 사업 집행 현장점검	산림청	'24. 10월
· 산림치유 운영 사업 완료	운영기관	'24. 12월

붙임 1

'24년 4대보험료를 적용기준(안)

□ 4대보험 요율 적용기준 *2024년 보험요율 반드시 확인

○ 2024년 기준 4대 보험료

구 분	2024년 적용요율	적용근거
국민연금보험료	4.5%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 기준 소득월액의 9%(근로자 4.5%, 사업주 4.5%)
국민건강보험료	3.49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보수월액의 6.99%(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	1.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실업급여 0.9%, 고용안정·직업능력 0.25%(150인 미만)~0.85%(1,000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0.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교육서비스업(0.6%)+출·퇴근재해(0.1%)+임금채권 부담금(0.06%)

붙임 2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구분(배점 100)		평가기준	배점					
합계			100					
정량평가(20) (서류심사)	1. 수행능력(20)	사업추진 여건	20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5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5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우수(5점) / 보통(3점) / 미흡(1점)	5					
		- 참여인력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비율 · 70% 이상(2점) / 30~70%미만(1.5점) / 30%미만(1점)	2					
		- 최근 3년('20~'22)간 산림치유사업 실적	3					
		<table border="1"> <tr> <td>참여자</td> <td>5천명 초과</td> <td>5천명~3천명</td> <td>3천명 미만</td> </tr> <tr> <td>점수</td> <td>3점</td> <td>2점</td> <td>1점</td> </tr> </table>		참여자	5천명 초과	5천명~3천명	3천명 미만	점수
참여자	5천명 초과	5천명~3천명	3천명 미만					
점수	3점	2점	1점					
정성평가(80) (발표심사)	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15					
	3. 사업계획서 충실도(65)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25					
		- 사업의 목적·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 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15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					
		- 사업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5					
		- 사업 홍보계획(수혜인원 모집 계획 등)	5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 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5					
		- 프로그램 창의성 · 시연 유창성 등 평가	15					
사업비 적정 여부	10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5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5							
가점	경연대회 등 수상	-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1					
	직무교육 등 참여	-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2					
	우수전문업 선정	- 최근 3년('21~'23) 우수 전문업 선정 실적	1					
감점	사업중도포기	-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	△5					

*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평가내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붙임 3

시연심사 평가표

전문업 명		접수번호	
-------	--	------	--

평가영역	소영역	배점	평가결과
	계	100	
제안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적, 전개방법, 과정 등의 적절성 ○ 내용의 독창성, 활용가능성 등 	아주 좋음	30
		좋음	24
		보통	18
		낮음	12
		매우 낮음	6
준비 및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가능할 수 있는 사전 설명 여부 ○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흥미 및 관심유발 가능성 정도 	아주 좋음	15
		좋음	12
		보통	9
		낮음	6
		아주 낮음	3
흐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전개가 내용에 맞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여부 	아주 좋음	20
		좋음	16
		보통	12
		낮음	8
		아주 낮음	4
진행기술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로운 질문이나 이야기로 관심 유도 및 주의집중 여부 ○ 전달한 과학적 정보의 근거를 명확히 밝혔는지 여부 ○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논의의 핵심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밝혔는지 여부 ○ 어휘력 및 적절한 용어 사용 등 	아주 좋음	20
		좋음	16
		보통	12
		낮음	8
		아주 낮음	4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하면서 전체의 테마를 적절히 강조했는지 여부 ○ 내용에 대해 느낀 점 등을 표현하고 공유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아주 좋음	15
		좋음	12
		보통	9
		낮음	6
		아주 낮음	3

*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평가내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붙임 4**산림치유지도사 활동일지****활 동 일 지**

결 재	근무확인자	팀장

근무일자 : 20 년 월 일(요일)

기 관 명		성 명	
연 락 처		활 동 날 짜	
활 동 시 간	: ~ :	활 동 장 소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사항			
프로그램명		소요시간	
참가 대상자		참가인원	
참가 대상자 특성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세부내용		
개선할 점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서식은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붙임 5

산림치유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방법

조사 개요

□ 목 적

-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산림치유 현장에서 실시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이용특성, 이용에 대한 태도, 요구도 등을 조사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선 및 수정함으로써 산림치유의 질적 향상을 지향

□ 조사 구성 체계

-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며, 동반 형태, 참여동기 등의 이용특성과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내용, 진행방법, 강사,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설문

조사 방법

□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개요 조사지 작성

- 전문 Survey 플랫폼(QR코드)을 활용(별도 안내)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시기

-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참여 후에 실시하며, 프로그램 이용특성,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평가

□ 참가자 만족도 조사 진행 방법

- 조사자는 설문 응답자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
- 조사자는 설문 응답자가 유아, 초등학교 이하 학생, 장애인 등일 경우 설문지는 성인 동행자가 직접 작성
- 조사자는 응답자의 설문 작성이 끝나면 중복응답, 누락문항 등을 확인

□ 참가자 만족도 설문 작성 안내

- 빠뜨린 문항이 없이 모든 문항에 응답
- 자유응답형을 제외하고, 하나의 문항에는 한 가지만 응답
-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일치되는 곳에 솔직하게 응답

붙임 6

산림치유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설문지

2024년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응답하신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의무)의 규정에 따라 **만족도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허락하시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주 관 기 관 :

☐ 조 사 기 관 :

치유의 숲 명칭	참여일시	참여 프로그램명
응답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응답자 연령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응답자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현재 만성질환 진단 여부	① 고혈압성 질환 ② 뇌혈관 질환 ③ 허혈심장질환 (협심증/심근경색증) ④ 당뇨병 ⑤ 비만 ⑥ 천식 ⑦ 폐질환/만성기관지염 ⑧ 만성부비동염(축농증) ⑨ 피부염 ⑩ 기분장애(우울), 스트레스 반응(공황, 강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⑪ 암 ⑫ 기타() ⑬ 해당사항 없음	

문1. 귀하께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주변의 소개 및 추천 ② TV/신문/라디오 등 대중매체 ③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
④ 트위터/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⑤ 산림청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⑥ 기타()

문2. 귀하께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주변 산림환경 감상 ② 다양한 체험거리 참여 ③ 친환경적 시설 이용
④ 친목 도모 ⑤ 건강 증진(신체적 측면) ⑥ 기분 전환(정서적 측면)
⑦ 자기성찰 ⑧ 기타()

문3. 귀하께서는 누구와 함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동행하십니까?

- ① 혼자서 방문 ② 자녀를 포함한 가족 ③ 자녀를 포함하지 않은 가족
④ 친구 및 연인 ⑤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 ⑥ 친목모임에서 단체로 방문
⑦ 회사에서 단체로 방문 ⑧ 기타()

문4. 귀하께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 참여 비용 ②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 ③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방문 소요시간
④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교통편 ⑤ 수목 및 산림 규모 등 주변 환경 ⑥ 기타()

문5. 귀하께서 참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서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은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세부 편성은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산림치유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및 활동은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 인원 수는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산림치유지도사는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예약 및 이용절차 등은 편리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사전 정보 및 안내가 충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사용된 체험도구, 기자재 등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장소는 쾌적하고 자연환경이 조화로우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6. 향후 산림치유 프로그램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 혹은 시설 등이 있으시면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사항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제안하신 의견은 소중히 활용할 것입니다.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붙임 7

사업비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 액(원)	구성비(%)	산출내역(천원)
인 건 비				
	산림치유지도사			- 3,003천원*00월= 천원(1급) - 2,457천원*00월= 천원(2급)
	행정인력			
경 비				
	교통통신비			- (교육비) 1인기준 100천원(교육비 외 교통비는 실비정산)
	피복비			- (근무복) 1인기준 300천원
	홍보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산업안전보건비			- 노무비의 1.85%
	보험료			- '24년 4대보험료를 적용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6%이내
이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총원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총사업비		96,000,000		- 상시인력 3인 기준 * 기관예산에 따라 변동

* 기관 여건에 따라 경비 등 비목 제외 가능(비목 추가 불가)

붙임 8

사업비 집행 내역

예산과목	집행일자	세부내역	집행액(원)
인건비	2024.03.31	3월 인건비	2,860,000
홍보비	2024.04.04	현수막	100,000

* 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을 엑셀로 정리

붙임 9

사업제안서 구성 내용[예시]

구 분		작 성 내 용
사 업 제 안 서	1.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 방향
	2. 담당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운영계획 - 대상별, 공간별, 질환별, 환경인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각 구역 콘셉트별 프로그램 구성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산림치유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마케팅 대책(치유의 숲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홍보) ◦ 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연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방안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p>※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p>

*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0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예시)

〈예시 1〉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특점	비고
합 계	100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20		
② 실행수준	40		
③ 운영관리	20		
④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특점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② 실행수준 소계		40	
④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③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④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2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4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예시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특점	비고
합 계	100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20		
② 실행수준	40		
③ 운영관리	20		
④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특점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수립(20)			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② 실행수준	①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20)			4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② 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안전관련 서류 기록관리(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③ 운영관리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④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기타사항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 가. 과업의 범위
 - 나. 단계별 임무
 - 1) ○○○○
 - 다. 안전관리
 - 1)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걱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가. “과업수행자”는 ○ ○ ○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13

산림치유분야 전문업 등록현황

□ 전문업 등록 총괄

(기준 : 2023.11월말 기준)

구분	합계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
전문업 등록 수(건)	162	48	114

구분	계	종합산림	산림치유업
합계	162	48	114
서울	22	10	12
부산	8	1	7
대구	2	-	2
인천	2	-	2
광주	2	2	
대전	7	3	4
울산	5	1	4
세종	3	1	2
경기	25	9	16
강원	18	4	14
충북	12	2	10
충남	11	3	8
전북	4	3	1
전남	15	3	12
경북	9	1	8
경남	12	3	9
제주	5	2	3

□ 전문업 등록업체

구분	지역		법인명(상호명)	비고
종합산림 복지업 (48)	강원(4)	강릉시	자연의 친구들	
		원주시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	
		홍천군	(주)약용식물교육개발원	
		춘천시	산림문화협동조합 더그루	
	경기(9)	성남시	그린뉴텍 (주)	
		광주시	숲과동행	
		남양주시	생태명상공동체	
		수원시	한국숲치유	
		양평군	숨숲 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시	사단법인 굿프렌즈	
		남양주시	숲에온	
		남양주시	자연에 말걸기	
		의정부시	명덕 숲	
	경남(3)	거창군	소리나무숲 주식회사	
		진주시	자연과사랑경남숲	
		거창군	좋은숲	
	경북(1)	경산시	다함께생태문화주식회사	
	광주(2)	남구	자연과사랑 숲	
		서구	주식회사 마음이음	
	대전(3)	서구	주식회사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	
		유성구	(주)해든숲	
		서구	사단법인행복한동행	
	부산(1)	동래구	(주)한국산림복지교육원	
	서울(10)	영등포구	(사)숲연구소	
		동작구	힐링숲	
		종로구	힐리아산림복지협동조합	
		은평구	주식회사 가자숲	
		강남구	숲바라미아	
동작구		협동조합 커뮤니티케어 연구소		
영등포구		사단법인 한국트레킹연맹		
성동구		사단법인 숲생태지도자협회		

구분	지역		법인명(상호명)	비고	
		서대문구	사단법인 다음숲		
		강북구	주식회사 한국숲정원		
	세종(1)	특별자치	주식회사 오감통통숲앤아이		
	울산(1)	남구	주식회사 숲프로		
	전남(3)	장성군	자연과사랑 남도숲		
		화순군	마음이음		
		목포시	유한회사 어울림생태연구소		
	전북(3)	남원시	지리산숲으로 협동조합		
		전주시	사단법인 산소리 숲 마을		
		김제시	(주)웰니스창		
		진안군	힐링수피아		
	제주(2)	서귀포시	가시리 포레스트		
		제주시	(사)웰니스더제주		
	충남(2)	서천군	산티숲		
		천안시	온숲		
	충북(2)	괴산군	숲이좋아산림치유사회적협동조합		
		괴산군	숲이좋아산림치유사회적협동조합괴산지사		
	산림 치유업 (114)	강원 (14)	춘천시	강원산림치유협동조합	
			원주시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	
			강릉시	사단법인 강원영동생명의숲	
강릉시			포!레스트		
삼척시			행복숲		
횡성군			숲 그리다		
춘천시			퀘렌시아		
평창군			사단법인 공감숲교육연구소		
영월군			행복한삶을주는협동조합		
영월군			사단법인 영월 숲해설가협회		
영월군			그린닥터		
원주시			함명옥숲학교 협동조합		
영월군			산촌힐링센터		
평창군			맑은숲		
경기 (16)		파주시	푸르미숲 주식회사		
		포천시	산림치유협동조합		

구분	지역	법인명(상호명)	비고	
	성남시	그린뉴텍 (주)		
		남양주	사단법인 행복한숲	
		성남시	휴앤치유사회적협동조합	
		용인시	하얀세상주식회사	
		남양주	주식회사힐링엔휴	
		양평군	양평군숲해설가협회 협동조합	
		가평군	주식회사 희망숲연구소	
		수원시	한국숲치유	
		양평군	행복누리협동조합	
		성남시	사단법인 숲과 아이들	
		의정부시	사단법인 굿프렌즈	
		동두천시	주식회사 디딤돌이엔씨	
		양주시	주식회사 감성숲	
		의정부시	아름다운 세상	
	경남 (9)	함양군	지리산용유담이야기	
		진주시	사단법인 경남숲교육협회	
		함양군	경남숲힐링이야기	
		창원시	유한회사에코힐링	
		창원시	주식회사 사람과숲	
		김해시	길 생태체험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거창군	포레듀오	
		함안군	주식회사 나루	
		창원시	다호 숲	
	경북 (8)	포항시	울림	
		영주시	꿈꾸는 목공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영주시	내안의숲 협동조합	
		경산시	다함께생태문화주식회사	
		구미시	한국생태문화협동조합	
		경산시	울림人경산	
		포항시	주식회사 페트리코	
포항시		사회적협동조합 숲과사람		
대구 (2)	달성군	열정조경		
	달서구	더 숲		
대전	서구	사단법인행복한동행		

구분	지역	법인명(상호명)	비고	
	(4)	유성구	세림원예연구소	
		유성구	(주)해든숲	
		동구	온새미로 숲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부산 (7)	남구	주식회사 드림숲지점2	
		사하구	숲지기 솔이참이	
		금정구	산골짜기 다람쥐(산골)	
		사상구	주식회사 드림숲	
		사하구	(주)숲지기 솔이참이	
		북구	주식회사 로프앤조이	
		남구	반디도시생태학교	
	서울 (12)	영등포구	주식회사 쓰리엔포레스트	
		강동구	서울시산림조합	
		종로구	(사)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용산구	주식회사 체험팩토리	
		관악구	휴 리스토어	
		용산구	주식회사 그린하트	
		강동구	사단법인 이음숲	
		강남구	주식회사어울숲	
		노원구	치유나무숲아웃도어연구회	
		금천구	숲생태문화협동조합	
		구로구	(사)세계자연치유협회	
		성동구	(사)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숲자라미	
	세종 (2)	특별자치시	한국숲치유연구소 주식회사	
		특별자치시	세종숲처럼(주)	
	울산 (4)	울주군	힐링숲	
		북구	푸른숲학교	
		북구	(주)숲담다	
울주군		주식회사 숲과함께		
인천 (2)	남구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		
	서구	새풀		
전남 (12)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더힐링		
	고흥군	숲에서 休		
	나주시	전남산림문화연구소		

구분	지역	법인명(상호명)	비고	
		장성군	자연과사랑 남도숲	
		목포시	네이처피아	
		목포시	유한회사 어울림생태연구소	
		나주시	주식회사 네이처피아	
		나주시	(주)명하햇골	
		무안군	유한회사 어울림숲연구소	
		광양시	광양숲 사랑회	
		화순군	느티나무	
		무안군	한글콘텐츠산업주식회사	
	전북(1)	남원시	지리산 자연 생태숲연구원	
	제주 (3)	서귀포시	제주 봄	
		서귀포시	제주숲길협동조합	
		제주시	사단법인 제주산림치유연구소	
	충남 (8)	서천군	산티숲	
		천안시	주식회사 위드포레스트	
		공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마우리팜	
		공주시	(주)키큰나무	
		천안시	행복 포레스트	
		천안시	온숲	
		아산시	주식회사 마음치유숲	
		아산시	숲피어라 주식회사	
	충북 (10)	충주시	수피아세상	
		영동군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	
		충주시	(사)충주숲	
		진천군	힐링플레이 주식회사	
		옥천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동행	
		괴산군	괴산숲사랑협동조합	
		진천군	(사)충북산림협회	
		진천군	그루터기 주식회사	
		청주시	충북숲해설가협동조합	
		청주시	(주)이랑치유센터	

붙임 14

우수전문업 선정 목록(최근 3년)

2021년					
순위	전문업명	업종	지역	시상	상훈
1	드림숲	숲해설업	부산 남구	최우수	산림청장상
2	(사)숲생태지도자협회 부설 숲자라미	숲해설업	서울 성동구	우수	산림청장상
3	사단법인 이음숲	숲해설업	서울 강동구	우수	산림청장상
4	드림숲	유아숲교육업	부산 남구	장려	진흥원장상
5	사회적협동조합 숲과사람	유아숲교육업	경북 포항시	장려	진흥원장상
6	전남산림문화연구소	산림치유업	전남 나주시	장려	진흥원장상
2022년					
순위	전문업명	업종	지역	시상	상훈
1	주식회사 로프앤조이	숲해설업	부산 북구	최우수	산림청장상
2	숲환경학교 주식회사	유아숲교육업	경기 안양시	우수	산림청장상
3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유아숲교육업	대전 서구	우수	산림청장상
4	사회적협동조합 다울숲	숲해설업	경기 양평군	장려	진흥원장상
5	사단법인 산소리숲마을	유아숲교육업	전북 김제시	장려	진흥원장상
6	배재에코브릿지 협동조합	숲해설업	대전 유성구	장려	진흥원장상
2023년					
순위	전문업명	업종	지역	시상	상훈
1	주식회사 로프앤조이	유아숲교육업	부산	최우수	산림청장
2	피노키오숲 영농조합법인	숲해설업	강원 원주	우수	산림청장
3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유아숲교육업	경기 수원	우수	산림청장
4	숲쟁이협동조합	숲해설업	전북 완주	장려	진흥원장상
5	사단법인 이음숲	유아숲교육업	서울 강동구	장려	진흥원장상
6	천년숲애 사회적협동조합	숲해설업	경북 경주	장려	진흥원장상

붙임 15 사업 참여 동의서(예시)

“가나다 전문업” 대표 귀하

본인은 귀사의 산림치유운영 위탁사업에 참여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취업 및 사업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향후 3년간 귀사의 사업참여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인적 사항

사업참여 동의서				
참여 분야		산림치유운영		
보유 자격		산림치유지도사 1급, 산림치유지도사 2급		
성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한자)			
주소	(우)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지역 거주기간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첨부(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자격 및 경력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산림치유지도사 1급			'00.00.00.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	19.1.1 ~ 22.12.5	사원		상주/비상주 (주 00시간 근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인

붙임 16**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예시)****1. 사업참여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의 사업참여 지원자로서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발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사업참여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산림치유운영 위탁사업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전문가의 적격 여부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 참여요건에 따른 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등의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교육전문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림치유운영 위탁사업 참여 전문가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산림치유지도사1급, 2급 자격증 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치유지도사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계약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u>	사업참여 전문가 관리	<u>경력사항 등 자격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u> 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u>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